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2557호
----------	--------

2021. 2. 4.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1. 21. 이수옥, 이재식 의원 외 8명
- 나. 회부일자 : 2021. 1. 22. 복지건설위원회
-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 2. 4.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이재식 의원)

가. 제안이유

위임 조례로서 상위 법령의 용어정의와 동일한 내용 등은 그대로 적용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규정을 정비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를 자치법규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중복되는 정의는 생략하고 문장을 정비함(안 제2조).
- 자치법규에서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무부과를 한 조항이 있어 이를 선언적 내용으로 수정함(안 제6조).

-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로 수정함(안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간사, 위원의 수당 등으로 정비함(안 제10조 ~ 제14조).
- 그 밖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 ~ 제17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신설함(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훈)

○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규정을 정비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3조 제7조 및 안 제12조부터 안제17조는 까지는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함.
-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의 용어 정리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이하“조례”)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중복되는 정의를 생략하고 문장을 정비함.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법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함.
 - 안 제6조는 자치법규에서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무 부과를 한 조항이 있어 이를 선언적 내용으로 수정함.
 - 안 제9조부터 안 제 10조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2018년 위원회 개선 계획에 의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경우 해당 국·소장이 위원장으로 한 지침에 따라 환경녹지국장으로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 2020년 7월 1월 직제 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에서 해당국 과장인 공원녹지과장으로 변경함.
 - 안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안 제 18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법 시행령에 따라 조문을 신설함.
-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법령체제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지장자치 단체에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